

진정한 공익의 대표로서 정부의 소신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아가 집권세력으로서의 권력적 타산은 문민정부로 하여금 뒤에 다시 지적하게 될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문제, 노동관계법, 국가보안법 등의 개폐문제 등과 같은 구시대의 부채들을 개혁현안의 목록에서 아예 배제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문민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날치기입법의 행태를 보이면서도 여야합의에 의한 정치를 표방한 집권당은 야당과의 협상지연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각종 개혁입법을 지연시킬 수 밖에 없다는 세련된 행보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특징적으로 나타난 개혁에 있어 국회의 소외 또는 의회정치의 소실이란 현상과 함께 국회가 개혁의 주체여야 하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모순적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³⁵⁾ 이와같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를 법제개혁의 요구에 우선시켜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선별하는 이른바 선택과 배제의 전략은 문민정부의 법제개혁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경향의 하나이다.

이 기회주의적인 선택과 배제의 전략은 여느 정권과 다름없이 문민정부가 견지해온 법에 대한 도구주의적 태도와 맞물려 있다. 법은 정치적 반대자를 링에서 배제하거나 노동대중의 통제를 위해서는, 그 억압과 이데올로기로서 양면성에 있어서, 노골적인 폭력의 행사 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수단인 반면, 통치의 효율성이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단히 거추장스러운 제약이다. 법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주로 정치적 편의의 차원에서 평가된다.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각종의 노동통제법 및 형사관계법들이 극단적인 권력집중 또는 외견상의 권력분립하에서 정책수단으로 선호되고 또 빈번히 적용되었던 사례들은 법이 지배권력의 전횡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반면 법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또한 권력남용의 무수한 사례들은 비공식화되고마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동안 사정과 개혁의 형평성결여를 주장해온 수구세력이나 비판가들의 항변이나 은전(恩典)의 이데올로기적 치장을 배경으로 단행된 끼워팔기식 사면(赦免) 그리고 노동관계법의 개

35) 가령 문민시대 첫 정기국회를 평가하기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주최 집담회에서 이정희교수(외대)의 토론요지(주간 시민의 신문 1993.12.25. 4면기사)를 참조.

정 보다는 노동문제의 공안차원에서의 해결에서 드러난 상대적으로 절하된 법제개혁의 우선순위 또는 선별적인 법개혁전략 등은 문민정부가 이러한 법의 도구화경향을 답습하고 있다는 혐의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이다.

문민정부의 법제개혁에서 드러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적극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악법개폐에 관하여 이렇다 할 법정책이 표명되고 있지 않는 점, 과거 군사정권이 위헌시비의 봉쇄를 위해 집어넣었던 헌법규정들에 대하여 아무런 헌법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문민정부는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점철된 헌법개정의 어두운 과거를 그냥 덮어두려는 것인가. 그동안 문민정부가 적지 않은 수의 개혁입법을 산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법제개혁은 개혁의 성과를 단순히 조문화하는 작업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인권의 신장을 위한 법제개혁의 철학이나 실천전략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을 말해준다. 여기에 문민정부의 법제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개혁의 과실(果實)이 아직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제개혁에 관한 철학의 빈곤은 당초 개혁에 환호해마지 않았던 이제 대다수 국민들까지도 그 개혁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게다가 단임제라는 헌법적 환경에서 문민정부의 개혁이 일회적 에피소드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를' 은근히 기다리는 잠재적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IV. 인권을 위한 법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1. 인권을 위한 법제개혁의 방향

문민정부의 개혁은 그동안 인권의 측면을 소홀히 다루지 않았는가 하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개혁의 정당성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약점이 될 수 있다. 개혁에 인권이라는 이념을 불어넣은 일, 이것이야말로 문민정부의 개혁이 이행해야 할 급선무이다. 인권의 보장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확립될 때 주어진다. 인권을 위하여 법제개혁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에서이다. 그러므로 법제개혁은 인권의 보장을 얻기 위

해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개혁의 목표인 민주화를 법의 영역에서 관철시키는 일이다. 법제개혁은 따라서 법의 민주화와 법을 통한 민주화를 아울러 요구한다.

인권을 위한 법제개혁은 법치주의가 전제로 하는 법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법에 대한 일상화된 불신현상은 과거의 반법치주의적 법현실의 귀결이었다. 법에 대한 불신은 무엇보다도 개혁의 실행수단으로서 법의 기능을 감퇴시키고 현행법질서의 실효성을 손상시킴으로써 궁극에 가서는 법질서의 정당성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문민정부의 법제개혁이 달성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법치주의가 약속하는 법적 절차와 실제가 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정한 법규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법의 제정·집행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해결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만 법의 정당성이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군사정권의 유물인 악법을 개폐하는데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김영삼대통령은 환경단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경제계획을 환경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받고 '32년간의 군사정권이 남긴 오물을 모두 이어 받아 청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한다. '악법'이란 바로 이 군사정권이 남긴 오물이 아니던가. 문민정부는 이러한 오물을 방치하는데서 오는 일말의 반사적 이익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구체적인 법제개혁의 실천을 통하여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의 보장을 위한 민주화의 과정으로서 법제개혁은 법을 억압과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생활규범으로 재정립하여 소수의 지배자의 수중에서 국민의 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우리시대의 법적 실천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법'을 쟁취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입법과정, 행정과정, 사법과정에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인권을 위한 법제개혁의 방향은 바로 이러한 '참여의 확대'를 가능케 하는 법적 보장에 두어야 한다.

2. 인권을 위한 법제개혁의 과제

우리는 이제까지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서나마 김영삼 문민정부에 있어 인권측면에

서 달성된 법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이제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권을 위한 법제개혁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차례이다. 법제개혁의 가장 주된 과제는 구시대의 악법을 개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양산된 법령들을 전반적으로 재심사하여 개혁할 수 있는 법제개혁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법제개혁의 관할이 비단 정부에만 있지 않고 국회, 법원 등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심금들의 협동이 필요한 이상 이러한 기구는 범국가적인 합동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구는 민의 활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로(水路)로서 각종 시민단체들의 협력과 국민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법적 장치를 확보해야 하며, 그 심사범위에 있어 비단 법률과 법률 이하의 각종법령의 개선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의 필요성까지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을 위한 법제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인권옴부즈만제도나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회균등사무소'(Equal Opportunity Office)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치수준에서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단체, 노동조합, 민간환경보호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에게 인권보호의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 밖에 법제개혁의 대상으로 어떤 법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이미 법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났다고 보므로, 그 내용을 다시금 상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법제개혁의 과제를 발제형식으로 제기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법제개혁의 메뉴를 제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 ① 국가보안법의 개폐
- ② 정보공개법, 고발자보호법의 제정
- ③ 공직자윤리법의 개선, 당내민주주의의 의무화를 위한 정당법의 개정,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의 제·개정
- ④ 행정절차법의 제정,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개정, 국가배상법의 개정
- ⑤ 공무원의 노동삼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헌법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관계규정의 개폐

⑥ 사회복지 및 사회적 약자·소수자(외국인노동자를 포함)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⑦ 환경법의 정비 및 실효성제고를 위한 법적 보완, 산업안전을 포함한 생활안전의 관리를 위한 입법

V. 맺는 말

그동안 김영삼 문민정부가 이루어낸 개혁의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개혁이 인권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누구라도 'YS는 못말려'를 읽고 즐길 수 있지 않은가. 문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변화에 마취되어 아직도 우리 사회 깊숙한 부위에서 조업중인 구시대의 악령들이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는데 있다. 자칫 개혁의 밧줄을 놓칠지도 모른다.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어 다시금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에서이다. 이제까지 김영삼 문민정부의 개혁과정에서 법제개혁은 독자적인 개혁의 실천영역으로서 고려되기보다는 개혁의 정치적 내용을 단순히 법조문을 통하여 제도화하는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개혁의 원탁에서 법제개혁은 단지 기능적 의미만을 부여받았고 악법개폐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그때 그때 정치적 국면전개에 따라 손익 계산의 대상으로만 고려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최근 김영삼 문민정부의 '개혁동아리'를 휘감고 있는 경제우선의 탈규제론이 기득권보호라는 함축과 더불어 선교(宣教)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혁의지의 감퇴에 대한 우려와 아울러,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개혁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법제개혁에 대한 문민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바로 그런 까닭에 개혁이 단임제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집권당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압력과 참여를 통해 법제개혁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어느 집권세력의 주관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개혁의 성과물을 인간을 위한 자산으로 귀결시켜 영속화하기 위한 전

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영삼 문민정부가 그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었던 생태적 제약들을 일거에 극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압력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법제개혁의 목표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임기를 넘어서는 시간적 차원을 갖는다. 법제개혁은 단순히 개혁의 성과를 법제화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참여를 통해 개혁을 촉발하고 개혁의 방향을 국민의 이익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에너지인 개혁의 동력(動力)을 진정한 법치주의의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민주적 과정이다. 법제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느냐에 따라 법치주의의 실현여하가 좌우될 것이고 나아가 개혁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발전적 자산으로 승계될 수 있을 것이다. 법치주의는 이러한 의미에서 법제개혁의 목표인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 金道昶, 1987, “새 行政爭訟法의 운영 1년에 즈음하여”, 공법연구 제15집, 1987
- 김도창(공저), 1980, 행정절차법연구(한국행정과학연구소편)
- 김성수, 1993, “한국환경운동의 연구”,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
(김계수외 공저), 한울
- 김향기, 1993,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민정부와 법제 개혁방향』, 한국공법학회 제35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 양건, 1994, “신정부 1년의 사정작업과 사법개혁”서울대 사회정의연구 실천모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심포지엄 『신정부 개혁 1년을 평가한다』 발표문
- 이해찬, 1994, “문민정부와 법치주의”, 『시민과 변호사』, 창간호 (1994/2), 52.
- 장명봉, 1991, “남북한기본관계정립을 위한 법적 대응”, 유엔가입과 통일의 법적 대응(한국공법학회), 121-137
- 한인섭, 1991, “분단과 통일, 그리고 법”, 『법과 사회』 제5호
- 허영민, 1989, “한국행정법 II - 현대행정에의 대응과 과제 - (1961-198 8)”, 공법연구 제17집
- 홍준형, 1987, “법의 지배와 마르크스주의의 법이론에 관한 연구”, 아주 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987, 93-135
1988, “법의 지배와 마르크스주의의 법이론”, 『한국사회의 현실』,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1992, “情報公開請求權과 情報公開法”, 『법과 사회』, 제6집(법과 사회이론연구회)
- , 1992, “행정의 의무이행을 관찰시키기 위한 소송 - 독일의 행정법발전에 있어서 소송법과 실체법의 상호작용”, 한국공법학회 제27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 , 1993, “情報公開請求權과 情報의 自由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金哲洙教授화감기념논문집소수
- 홍준형/김석준/강경근, 1993, 『열린 사회, 열린 정보』, 비봉출판사
- Aubert, W., 1983, In Search of Law: Sociological Approaches to Law
- Collins, H., 1982, Marxism and Law(홍준형역, 마르크스주의와 법, 1986, 한울)
- Yoon, D.K., 1990,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Westview Press & Kyungnam Univ. Press,
- Fitzpatrick, P., 1980, Law and State in Papua New Guinea, Academic Press
- Ghai, Y., 1986, The Rule of Law, Legitimacy and Governance, in :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Law(IJSL: Vol. 14), Academic Press
- Hayek, F.A., 1944, The Road to Serfdom, 1944(정도영역, 예종에의 길, 1973)
- Hunt, A., 1978, The Sociological Movement in Law, Macmillan
- Hunt, A., 1992, A Socialist Interest in Law, New Left Review, Vol. 192, March/April 1992, 111-112.
- Picciotto, S., 1979, The Theory of the state, class struggle and the rule of law, in Capitalism and the Rule of Law(ed. by B. Fine et al.),

Hutchinson

Thompson, E.P., 1975, Whigs and Hunters: the Origin of the Black Act,
Pantheon Books

Wade, E.C.S./Bradley, A.W., 1985,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10th.
ed.), Longman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

-- 인권침해사건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변호사 박 원 순

1. 서 론

(1)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문민정부가 들어서 모든 것이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오늘도 야수와 같은 군사정권의 발톱에 할퀸 상처받은 영혼을 부동켜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 만 33세인 문국진씨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네살박이 딸과 아내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1986년부터 시작된 정신분열증으로 이번으로 벌써 여섯번째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문국진씨는 대학 2학년때인 1980년, 서슬퍼른 전두환정권하에서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되어, 프락치활동을 강요하는 치안본부 형사들의 무차별 구타와 물고문을 1개월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¹⁾

문민정부의 깃발아래 모든 인권문제가 해소되고 인권보장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환상을 일시에 깨우는 경구가 아닐 수 없다. 위와같이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인권문제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위선이요, 배신이다. 우리 이웃들이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 상처로 지금도 쓰라림을 당하고 있을 때 과거는 지나간

1.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 준비위원회, 10여년의 청춘을 앗아간 고문의 상흔, 1993. 8. 7, p. 2

어제일 수 없다. 그것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재이며 그 상처의 치유없는 미래는 우리의 편안과 행복의 보장일 수 없다. 더구나 문제는 ‘상처받은 영혼’과 육체를 부둥켜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이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있다.

(2) 우리 현대사와 '과거청산'의 과제

새로운 정권에게 있어서 구정권은 언제나 어떠한 형태이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 정당성의 입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진 형태와 양상에 따라 구정권에 대한 정리의 내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같은 구정권하의 범죄와 과오에 대한 청산의 노력이 권력의 교체기마다 제기되어 왔다. 해방직후에 일제하의 반민족행위자들의 처벌문제가, 4.19혁명 이후 자유당정권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응징문제가, 5.16 이후 부정선거·정치깡패·옹공활동의 재판이, 제6공화국과 현정부하에서 광주학살의 책임자처벌문제 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곤 하였던 것이다. 특히 '해방이후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정부하에서 그동안 반민족적이고도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의 역대 정권하에서 저질러지거나 은폐되어왔던 수많은 권력남용사건, 인권유린사건, 정치적 범죄행위등이 일시에 터져나와 그 진실의 공개와 피해자 배상, 책임자처벌등의 요구가 홍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요구들이 제대로 수용되고 처리된 사례를 우리 현대사에서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 이시간까지 여전히 그 허다한 사건들의 진실을 어둠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의 고통 역시 치유되지 못한 채 내팽개쳐져 왔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그같은 완벽한 '과거의 청산'을 이룩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사회만큼 과거의 문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세대와 세대를 넘어 축적되고 해결이 지연된 사례는 보기 드물다. 너무도 오랜 세월 계속된 권력남용과 인권유린, 그 희생자들의 숨죽인 인고, 가해자들의 승승장구와 희희락락, 이것이 우리 현대사의 좌절의 자화상이다. 이제 미루어진 숙제, 지연된 정의의 심판을 더 이상 다음 세대로 넘겨 줄 수는 없다.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것이다.

(3) '과거청산'의 개념과 범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의해 온 '과거의 청산'이란 구정권과 그 시대하에서 벌어진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리와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사건의 진정한 해결에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둘추어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명목상의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법률적인 시정²⁾ 또는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진실의 공개가 우선된다. 완전한 진실의 공개 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가 되고 말며 정확한 진실의 파악 없는 관용은 특혜의 면책에 불과하게 된다.³⁾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권리 를 다시금 짓밟는 것이다.⁴⁾ 제대로 밝혀진 진실의 바탕위에 희생자들에 대한 사면과 배상, 원상회복⁵⁾,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거의 권력에 몸담거나 그 권력의 행사에 관련하여 불의와 부패,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⁶⁾과 재산의 물수동 인적 청산 역시 이 '청산'의 범주에 들어간다. 뿐만아니라 그와 같은 불의와 부패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도구로서의 법률과 제도, 관행의 폐지와 개정등 이른바 법적, 제도적 청산의 형태 역시 피해회복과 배상의 연장선상에 있다.⁷⁾

2. 여기서 법률적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언사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어떤 권리 남용행위가 범죄라는 법률적 평가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처벌, 피해자의 배상에 대한 권리 인정이 수반된다는 의미이다.

3. Jose Zalaquett, Confro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Former Governments: Principles Applicable and Political Constraints, Aspen Institute for Humanistic Studies Conference on State Crimes, November 4-6, 1988, p.10

4. Jose Zalaquett, 위의 글, p.11

5. 원칙적으로 희생자들의 피해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법이다. 생명의 박탈, 고문과 가혹 행위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상처는 영구한 것이다. 따라서 배상과 원상회복이란 가능한 범위안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루과이에서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배상위원회 설치, 망명자들의 귀국 촉진, 정치적 이유로 퇴직당한 사람들의 원직 복직, 정치범으로 고생한 사람들의 재판 및 수감생활 중의 비용 배상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Jose Zalaquett, 위의 글, p. 52)

6.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보는 견해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체제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유린과 정치권력의 남용에 대한 죄는 처벌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수와 존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범죄자들의 처벌은 부분적인 치유책이기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지고 있는 국가의 부채이기도 하다는 적이 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Alice H. Henkin, State Crimes: Punishment or Pardon -- Conference Report, the Aspen Institute, November 4-6, 1988, p. 2 참조)

⁷.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의 배상등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위

2. 미해결의 사건으로 가득찬 한국 현대사

한국의 현대사가 격동의 반세기였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좌우의 대립, 민족의 분단과 전쟁, 계속된 독재정권과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은 그 자체로서 민족내부에 깊고 깊은 상처들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암살과 학살⁸⁾, 의문의 죽음들⁹⁾, 정치적 이유에 의한 테러¹⁰⁾, 부당한 구금

하여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로 임명된 테오. 반 보벤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희생자들이 가지는 넓은 의미의 배상(reparation) 또는 구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Second Progress Report Submitted by Mr. Theo van Boven, Special Rapporteur,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9 July 1992, E/CN.4/Sub.2/1992/8, pp.22-23 참조)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치료, 고용, 주택, 교육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1)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 (2)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 (3) 책임자의 처벌
- (4)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 (5)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 (6)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돋는 요원의 훈련
- (7) 다음 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A.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 특히 민간 통제하에 두는 일.

B. 군사법정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

C.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D.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E.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F.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8. 학살사건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 가운데 제대로 진상이 확인되고 배상과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 6.25전쟁을 전후하여 군. 경.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인원이 100만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6.25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르뽀, 둘째계, 1990) 또한 최근에는 제주 '섯알오름'에서 1백32명의 민간인이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군경에 의해 연행된 뒤 1950년 8월 20일 집단총살된 사건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1993년 8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

9. 과거의 의문사는 제대로 알려지거나 통계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다. 다만 80년대 후반 조직된 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학생, 노동자, 군인등 정치적이유로 인한 의문사 사건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 널리 알려진 대표적 사건으로 서울대 최종길 교수사건과 장준하선생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보부에서 수사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최종길 교수사건은 1988년 카톨릭 사제단에서 고발하였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과 재판, 고문¹¹⁾과 처형등이 줄을 이었다. 권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쿠데타와 반역의 음모에서부터 무고한 이름없는 시민의 인권유린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원한과 분노와 억울한 사건들이 쌓여 있다. 당연히 그 시대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할 일들이 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으로 말미암아 은폐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됨으로써 다음 시대에 큰 짐으로 넘겨져 왔던 것이다. 이 사건들은 그 희생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유족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의 명예를, 우리 사회에 어둠의 그림자를 남기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와 고통들은 사건 당시부터 은폐되거나 왜곡되기 일쑤였다. 이른바 반공이데올로기와 이에 터잡아 승계를 거듭한 군부독재정권은 과거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에 관하여 달가워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비단 김구선생 암살사건에 한정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 그리하여 이 나라는 천인이 공노할 살인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치권력의 줄만 든든하면 처벌은커녕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범죄자들의 낙원이 되고 말았다. 4월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무너진 뒤 역대정권이 바뀔때마다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의 여론이 빗발쳤으나 언제나 정부당국자들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효만료니 일사부재리 원칙이니'하면서 회피하는데 급급해 왔다."¹²⁾

수사결과발표로서 더 이상 수사되지 못하였다. (뉴스메이커 1993년 5월호 참조) 장준하씨사건은 타살의 가능성성이 많다는 서울방송의 보도와 그렇지 않다는 월간조선 사이의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시사저널 1993년 5월 20일자 pp.32-33 참조)

10. 예컨대, 1965년 동아일보 간부들에 대한 납치. 테러사건이 있다. 이사건은 최근 전 체육청소년부장관까지 지낸, 사건 당시 육군모방첩부대 소속 대위였던 이진삼씨의 개입의혹으로 널리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993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조)

11.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의 역사는 일제시대와 해방직후부터 시작된다. 고문에 의한 사망사건들은 자유당정권에서부터 유신정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 고문사건들은 5공말기의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씨사건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6공 당시의 고문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후유증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인용한 문국진씨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한 최동, 전희식, 김복영, 강환옹씨등이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는 고문피해자고발센터를 열었으며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고문피해자 조사와 제소 도움을 주고 있다. (1993년 10월 18일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12. 곽태영, "백범 암살배후 이번엔 밝혀야", 한겨레신문 1992년 5월 10일자 칼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계속 장악하거나 그 후계자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거의 정치적 범죄에 대하여 추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정치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이나 지식인들조차 감히 그 혹한의 세월동안은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거나 진상을 추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의 이른바 '6월 항쟁'과 이로 인한 군부독재정권의 붕괴였다.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온 냉전과 반공이데올로기의 해체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에 의하여 간혀 있던 진실과 그것에 대한 갈망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다. 몇몇 언론에서 인권침해사건을 자유로이 다루기 시작하고, 열어있던 사법부가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러나 제6공화국이나 김영삼 정권 역시 직선제 정부 또는 민간정부 그 어떤 이름을 붙이건간에 실제 이러한 과거의 청산에 대한 의지와 관심에 있어 과거의 정권과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같은 사건 가운데 이른바 '거창양민학살사건' 하나¹³⁾를 예를 들어 과거 한 시대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역대정권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려올 수 있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자유당정권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양민학살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719명의 양민이 학살되고 이를 진상조사하려 나선 국회조사단에 까지 공비를 가장하여 사격을 가한 이 사건은 이미 자유당 정권하에서 조차 관련자 수명이 구속되어 재판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군법회의에서 진행된 이 재판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의 피고 역시 1년만에 석방되고 말았다.¹⁴⁾

13. 6.25를 전후한 시기에 군인, 경찰, 우익단체에 의하여 학살당한 민간인만도 1백만명에 이른다는 조사보고가 있다.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 6.25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르뽀, 돌베개, 1990) 위 책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놀라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북 문경, 대구, 부산, 경남 김해군 진영, 경남 충무, 경남 거제, 전남 함평, 경남 산청, 함양, 거창을 현지 취재하면서 필자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은폐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놀라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 해당했던 사람들조차도 군, 경, 우익단체에 의해 수십만의 민간인이 학살되었음을 시인하는 증언을 접하면 서 그 희생된 죽음의 숫자가 1백만에 이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위의 책, 서문에서)

"그러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의 귀에 익은 '은폐, 조작'이 제멋대로 행해졌다. 얼마나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으며 학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국회의 논의는 용두사미가 되고, 부산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한 두 관리의 얼굴을 바꾸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 - - 연이어진 군지휘관들에 대한 재판 역시 이와 크게 다른지 않았다. 주시하는 여러 눈들을 가리기 위한 판결에 그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두 화려하게 복귀했다. 오직 죽은 사람만이 원통해 하고 말 일이던가?"¹⁵⁾

4. 19혁명에 이르러 삼엄했던 자유당정권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유족들은 비로서 한껏 힘 자신들의 사연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유족들은 조심스럽게 국회에 이사건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국회는 1960년 5월경 조사단을 파견해 무고한 양민학살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새로 들어서는 민주당정부에 이관한 채 더 이상 사태진전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5.16쿠데타는 유족들을 더 큰 절망의 심연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국회에 진정한 유족대표를 포고령위반으로 구속하는가 하면 합장해둔 묘지조차 파헤쳐버렸던 것이다. 10.26을 거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서 이들은 정부에 위령비 복원과 위령회관 건립, 위령제단 설립을 탄원했다. 내무부에서는 "이해는 가나 불온세력이 군을 악선전할지 모르므로 양해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회신뿐이었다. 1988년 11월 광주학살·5공비리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하자 고무를 받고 또다시 진정과 시위로 이 문제의 해결을 정부와 각계에 호소하고 다녔다. 역시 어느 곳에서도 관심은 없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은 좌절과 시름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들에게 또한번의 희망을 주었다.¹⁶⁾ 이들은 배상조치와 기념관 건립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입법의

14. 당시의 사건 진상과 이에 대한 자유당정권의 호도책, 미온적인 재판과정과 그 결과등에 관해서는 김원기, 비화 제1공화국, 동아일보 1974년 3월 19일부터 같은해 4월 19일까지의 '거창사건'의 연재기사 참조.

15. 노민영, 강희정, 거창양민학살 -- 그 잊혀진 피울음, 온누리, 1988, 서문에서

16. 유족들의 분위기를 어떤 잡지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른바 '거창양민학살사건'이라고 알려진 51년의 겨울의 끔찍한 사건은 그 유족들에게 지난 42년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왔다. 그 때문에 '문민시대를 맞아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 이곳 유족들에게 때늦은 회한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시사저널 1993년 6월 3일자, p. 42)

제정을 목표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이미 1988년 여소야대 정국 당시에도 거창출신인 김동영의원의 주선으로 평민·민주·공화당이 합의해 특별입법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었다. 전문 26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된 '거창 사건배상특별법안'은 "국가 또는 정부는 국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수행 목적과는 반대로 고의적으로 거창양민들을 비참하게 시살하고 사건의 시발을 조작 날조하여 사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누명을 씌워 은폐하고, 전가육 식량 가재에 방화 소실 및 가축을 약탈한 범법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사상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재산피해 위자료 실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후 민자당 이강우의원등은 그 법안의 제목 자체를 '거창사건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바꾸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배상' 대신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창사건 유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등 본질적 내용을 변질시켜 국회에 제출하였다.¹⁷⁾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여야 모두로부터 별반의 관심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됨으로써 거창사건의 유족들은 또 다시 절망의 심연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3. 과거청산의 법적 도구, 그 유용성과 한계

(1) 기관

위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사건들을 오늘날 재조명하여 법적 처리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잘못된 법률과 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 처형되거나 수형생활을 한 경우 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등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그 사건의 수사개시 또는 재수사로 진실을 밝히고加害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 그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17. 이 법안은 '거창사건' 자체를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국군병력이 1951년 2월 9일, 10일, 11일에 걸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작전수행 중 과잉작전으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제2조 제1항)으로 규정하여 학살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언제나 부딪치는 것은 과연 재심절차가 효과적으로 그같은 원죄(冤罪)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제도인가, 민형사상의 시효제도에 의하여 더 이상 문제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국가의 책임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과연 현재의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이 성실하고도 단호한 조사를 하겠는가하는 것들이다. 적어도 현재의 법률체계와 그 운용과 관행은 위와 같은 구제조치를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체계에서 실효성있는 인권구제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 종래의 확립된 법률과 제도의 변경, 새로운 해석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제도들의 운용현실, 한계와 함께 새로운 이용가능성도 간략히 검토해 본다.

(2) 재심제도

권력남용에 따른 인권침해와 국민의 희생이 대체로 법률이라는 이름과 사법부 판결, 결정이라는 권위에 의해 정당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수없이 양산된 양심수의 구속과 처벌이 바로 법관의 서명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당하지 못한 법률, 위법한 수사·재판절차에 기초한 이와같은 구금과 판결은 사실상 위법 부당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¹⁸⁾

이러한 위법 부당한 재판에 의한 인권유린사건은 현재의 소송법 제도하에서는 재심제도에 의해 구제받지 않으면 안된다. 재심은 일단 확정된 재판을 바로 잡아서 중대한 인권유린을 구제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다.¹⁹⁾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을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보다 큰 형사소송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의 이념 때문에 근대국가에서 재심제도는 거의 예외없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²⁰⁾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8. 이러한 사실은 일부 법관들 스스로가 자인한 바였다. 소장법관들의 '사법부 개혁견의서'의 일부 내용이 잘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때,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 수호를 1차적 임무로 하는 사법부는 마땅히 '그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 우리 사법부는 그와같은 선언을 침묵으로 대신했고, 나아가 '그것이 정의'임을 선언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의 정치권력 앞에 무력하기도 했다." (1993년 6월 10일자 조선일보)

19.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5, p.592

- 가.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형소법 제420조 제1호)
- 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동조 제2호)
- 다. 무고로 인하여 유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동조 제3호)
- 라.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동조 제4호)
- 마.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동조 제5호)
- 바.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동조 제7호)

우리의 재심제도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 그 자체가 크게 부당하거나 후진적인 것은 아니다.²¹⁾ 그러나 종래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재심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은 우리의 현실여건에 비추어 보면 극히 적다. 첫째, 대부분의 확정된 사건들이 제대로 물증과 인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보면 위조·변조한 문서, 허위로 한 증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컨대, 웬만한 국가보안법사건은 별다른 물증없이 공범인 상피고인의 진술이 상호 보강증거가 되거나 사소한 유인물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둘째, 관여된 법관, 검사, 경찰관에 대한 직무상의 범죄를 드러내어 조사하고 고소하여 이를 유죄판결까지 받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검사는 이를 확인하고 판사 역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호소에도

20. 日本刑法學會, 刑事訴訟法講座 第3卷, 有斐閣, 1964, p.191

21. 그러나 영미법계의 경우는 훨씬 재심사유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들을 비밀스럽게 만남으로써 강한 선입견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 21년동안의 감옥생활을 하던 죄수가 풀려나기도 했다. (Dennis Riodan, "Freedom for Johnny Spain: The Final Push", Stanford Humanities Review, Vol.1 No.5, 1990, p.19이하)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심리하지 않음으로써 조작된 사건이 그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다²²⁾. 그러나 고문한 수사관을 찾아 고소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그와 같은 직무범죄 은폐에 능숙하였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 시인하기를 꺼려왔던 법관들의 입장 역시 재심제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세째, 사건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재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금전, 의지를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목격한 검사와 법관에 대해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며 그들을 상대로 한 어떠한 문제의 제기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통상의 재판보다 까다로운 재심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입수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보조할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네째, 이러한 당사자들을 고무하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재심을 제기하거나 재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권단체나 사회운동단체²³⁾, 또는 지성인 그룹들이 전혀 부재하다. 또한 가장 큰 역할을 하여야 할 변호사단체의 관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²⁴⁾ 이러한 현실은 극히 미미한 재심제기율, 재심인용사례를 놓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두말 할 나위가 없다.²⁵⁾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재심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특별법의 제정 또는 재심제도의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22. 사건의 조작에는 고문에 의한 적극적 조작, 예단에 의한 편파 수사, 그리고 자백편증의 경향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佐藤友之, 寛罪の戰後史, 圖書出版社, 198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모든 형태가 대부분의 사건에 결합되어 있어 억울한 사건이 일본 보다 훨씬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3. 일본만 해도 소화 48년 이른바 '白鳥事件'의 재심을 구하는 운동이 높아가는 가운데 松山, 島田, 帝銀事件등의 구원활동에 참가하던 사람들이 함께 "재심을 구하는 운동을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발전시킬 목적"으로 再審事件全國連絡會가 결성되어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다. (五味武司等, 日本の 寛罪, p.16) 또한 1969년 3월에 발족한 원죄사건구원연락센타는 "1.1인의 인민에 대한 탄압도 전인민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한다. 2. 희생자의 사상 신조의 여하를 묻지 않고 구원한다"라는 2대원칙을 가지고 활동을 벌이면서 각 지역에도 연락센타를 세웠다. (위의 책, p.89)

24. 역시 일본의 경우,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인권옹호위원회의 한 부서로서 존재하는 재심부회 (제1부회)를 통하여 수많은 재심사건을 접수·조사·처리해왔다. 소화 57년 한해 재심사건의 관련기록 등사, 조사여행비용, 담당위원수당등으로 1,670만엔을 지출할 정도였다. (伊藤和夫, "日弁連と再審の歩み", 위 日本의 寛罪, p.207)

25. 참고로 재정신청사건숫자를 보면 1976년 31건, 1977년 29건, 1978년 45건, 1979년 9건, 1980년 28건, 1981년 25건, 1982년 82건, 1983년 37건, 1984년 25건, 1985년 30건등이다. (법원행정처, 사법년감, 1986, p.378)

(3) 시효문제

지독한 인권유린과 참혹한 피해를 당하고도 오랜 세월동안 숨죽인 생활을 해왔던 희생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이제, 어떠한 법률적 구제조치에도 당장 걸리는 문제가 바로 시효제도이다.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혐의로 수배되어 있는 이근안 경감과 관련하여 공소시효문제가 일반에게 널리 관심을 끌고 있으나²⁶⁾ 사실 공소시효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계속 논란되어 왔다. 형사상의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최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15년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신 시절 이전의 모든 정치적 범죄들에 대한 소추는 현행 소송법상 불가능해지고 만다.

이와 같은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공소시효의 근거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불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시간적 경과에 의한 가별성의 감소²⁷⁾, 증거의 산일(散逸), 이외에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복합적 요소가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⁸⁾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소시효제도의 근거는 적어도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많은 정치적 범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 다수의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도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경감되어 오지 않았고 국가가 수사와 소추를 마음만 먹는다면 증거는 있을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고통받기는 커녕 국가적 보호의 올타리속에서 권력과 부를 향유해 왔던 것이다.

공소시효가 결코 천부의 제도라든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절대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수의 영미법계 국가들²⁹⁾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시효제도를 가지고 있

26. “이근안 왜 못 잡나 -- 도피 5년째, 수사 제자리 걸음”(1993년 2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사), “수배 5년 - - 이근안 안잡나 못잡나, 제자리 맴도는 검.경수사”(1993년 3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등의 기사에서 이근안 경감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27. 여기서 가별성의 감소라는 것은 범죄의 사회적 영향의 미약화, 즉 피해감정이나 사회적 응보 감정의 회복화에 의한 처벌가치의 체감을 의미한다. (青柳文雄외, 註釋 刑事訴訟法 第2卷, 立花書房, p.361)

28. 이제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8, p. 369

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서는 대륙법계³⁰⁾와 영미법계를 불문하고 공소시효를 철폐하거나 제한한 사례가 대단히 많다.³¹⁾ 이러한 국가적 관행을 조사한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시효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시효제도는 ‘정의의 요구’가 아니다. 이 제도가 약간의 국내법 체계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은 대단히 힘든 과정을 거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의 일’인 것이다. 더구나 공소시효제도는 모든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수많은 국가가 전혀 그러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³²⁾

이것은 결코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의 도피처 또는 방파제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소시효제도는 오히려 정의의 실현에 대한 하나의 장애물이며 불의의 의지처에 다름 아니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공소시효제도가 헌법에서 예상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잔혹한 정치적 범죄, 학살행위,

29.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앰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오판의 위험성을 염격한 적법절차의 보장과, 시간이 경과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가 현출불가능한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에 의하여 제거하고 있다.

30. 독일의 경우 1969년 나치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공소시효의 기한을 1979년까지 연장하였다가 1979년에 이르러 살인죄에 한하여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Robert A. Monson, “The West German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A Political, Legal, and Historical Exposition,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0, 1982, p. 605 이하 참조)

31. 유엔사무총장이 조사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에 관하여 원래의 법률제도 또는 특별입법때문에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인디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캐나다, 나이지리아, 폴란드, 싱가포르, 우간다, 블리비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소련, 영국, 미국등이며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들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없앤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등이다.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가 국내법상 적용된다고 한 나라는 캄보디아, 카메룬, 일본, 말타, 모로코,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터키, 베네수엘라등이다.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Question of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E/CN.4/906, 15 February 1966, p. 53 참조)

32.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위의 문서, p. 117

가혹한 고문행위등 일정한 경우에 대한 공소시효제도의 제한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적 질서의 구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³⁾.

민사상의 시효제도의 취지도 형사상의 공소시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존재이유로서 첫째,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생기게 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둘째, 그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며, 셋째, 오랜 기간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권리 위에 잡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³⁴⁾ 그러나 이역시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인권유린 사건이나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위와같은 시효제도의 일반적 존립근거가 설득력을 잃는다. 이들 희생자들을 '권리 위에 잡자는 자'로 단정한다는 것은 난센스이기조차 하다. 더구나 시효제도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불의에 기초한 질서라고 할 때 오히려 그러한 질서는 번복될 필요성 조차 있는 것이다.³⁵⁾

33. 소박한 견해이기는 하지만 공소시효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여대정권들이 내세워온 바대로 '법'이 문제이고 '공소시효'가 문제라면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암살을 공모하고 실행한 자들,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들, 암살자를 보호해온자들을 남김없이 밝혀내어 심판해야 한다. --- 그리하여 반역의 말로가 어떠한지, 역사를 거스른 죄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가 살아 숨쉬게 되고 민족정기 또한 생동하게 되는 것이다."(권중희,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들베개, 1993, p.16)

34. 주재황외, 주석 민법총칙(하),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pp.630-631 및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5, p.491

35. 1993년 12월 15일자로 '일제하의 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반민족행위와 관련한 민족사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안'은 시효제도 배제와 재심개시의 특례등을 규정하는 획기적인 것이다. 이 법안의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제3조 (제한 적용) 1. 국회는 민족사의 정통성회복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재조명 및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2. 국회는 조사결과 법원(헌법재판소 포함)의 사법절차를 거쳐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민사시효 배제)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 재산권에 관련된 민사시효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형사시효와 조사)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때에는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추 처벌할 수는 없다.

제6조(재심사유) 국회에서 위 제3조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상 재심 개시된 것으로 본다.

(4) 특별검사제도

지난 1988년 6공화국의 출범 이후 쏟아져 나온 과거사 정리,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불신과 함께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이른바 '5공비리'의 수사를 둘러싸고 특별검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뜨거운 것이었다.³⁶⁾ 실제로 이 당시 조승형의원등 67인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³⁷⁾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특별검사제가 아니라 다수의 특별검사와 수사대로 구성된 특별검찰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³⁸⁾ 그 이후에도 특별검사제 요구는 줄기차게 터져나오곤 하였으며³⁹⁾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일 때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인권유린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구속·기소·처벌된 사례들에는 대체로 경찰·안기부(중앙정보부)등에서의 가혹한 고문이 검찰에 의하여 묵인 또는 은폐의 노력이 개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을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새로운 정부하에서도 검찰의 인적, 제도적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정치적 사건, 인권유린사건을 검찰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요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할 수 있

36. 그 당시 특별검사제는 단순히 재야단체의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당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당시 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자유언론회, 자유언론 1989년 1월호, p. 42 이하)

"특별검사제와 전두환·최규하씨의 국회청문회 출석이 5공비리처리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는 삼권분립에 위배가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게 아니거든요. 특별검사는 물론 국회가 추천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서 조사를 벌이고 일단 조사결과만 국회에 넘겨주면 국회에서 질의를 벌이는 겁니다. 특별검사는 정부의 어떤 기구라도 전부 다 지휘,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수사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7.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고문등 인권침해사건과 권력형부정비리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회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검찰권을 발동하여 5공청산에 과감히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정부의 5공청산의지 결여와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5공청산작업이 한계성을 노정하데 되었으므로 국회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의 한계성과 검찰의 무력성을 극복하여 조속히 5공청산작업을 마치고 민주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특별검사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44회국회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p.3)

38. 1989년 2월 1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39. 예컨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수사를 놓고 재야법조계와 학계인사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992년 9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

다.

이 제도의 도입이 우리의 헌법체제하에서 가능한 일인가. 특별검사제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논쟁의 여지와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을 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들을 침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삼권분립 그 자체의 취지가 권력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에 있다고 볼 때 형식적이고도 무조건적인 분립만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헌법체제하에서도 특별검사제 도입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⁴⁰⁾ 미국의 대법원판결이 특별검사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도 바로 이같은 헌법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⁴¹⁾

(5) 국제법상의 근거와 그 이용가능성

대체로 권력남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바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하는 일반적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개별적인 협약과 조약에 의해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인권규약 제2조는 당사국이 그 규약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고 억지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약은 또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당연히 그 구제의 수단이 된다.⁴²⁾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끝에 '과거청산'의 한계를 느낀 남미의 인권단체들이 국제적 인권 기구와 협약에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주조약(The Organization of the American States)에 의하여 창설된 미주인권

40. 김창국,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1991년 9월 9일 및 9월 12일자 논문도 같은 취지임.

41. 미국의 법무차관이었던 T.Olson이 1983년 환경보호국 분쟁과 관련하여 행한 의회증언이 위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검사 Morrison이 임명되자 Olson이 특별검사제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내려진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미국대법원은 "이 법은 헌법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임명조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권한의 침해로 인해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자세한 것은 Earl C.Dudley, Jr., "Morrison v. Olson: A Modest Assessment", *The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Vol. 38, 1989, p.255이하 및 진정구 편,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월보, 1988년 10월호, p.85 이하 참조.

42. Alice H.Henkin, 위의 글, p.5

협약(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인권위원회, 인권재판소등이 이들의 일차적 호소대상이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실종사건'들이 인도에 대한 죄이며 해당정부가 그러한 범죄를 수사,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권유린의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법령이 그 자체로서 불법적이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권유린사건들은 인도에 대한 죄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법 2차세계대전 이후 확립되기 시작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에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다.⁴³⁾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많은 학살사건, 고문사건등도 이러한 법해석에 따라 '인도에 대한 죄'로 평가하여 시효부적용, 보편적 관할권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권유린사건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과 면책의 광범한 세계적 현상은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논의 항의에 직면하였으며⁴⁴⁾ 마침내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들에서도 정식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대책이 마련중이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2년 이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인권범죄 면책의 현상, 처벌확보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기준등에 관하여 최근 중간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⁴⁵⁾ 뿐만아니라 2차세계대전 이후 인권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상설재판소의 설치를 위한 노력 역시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진전은 인권범죄가 결코 한 국가의 주권의 올타리안에 방치할 수 없다는 자각에 따른 것이다.

4. 김영삼 정권과 '과거청산'의 시종

43. The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Issues in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lected Civilian Governments in Latin America*, p.13.

44. 이에 관한 논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쌓여 있다. 최근 아시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와 요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범죄자들의 처벌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Institute for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ecommendations of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Law-Making and Transition to Democracy*, 1991, Kathmandu, pp.14-17 참조.

45. Commission on Human Rights, *Progress Report on the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ors Prepared by Mr. Gisse and Mr. Joinet*, E/CN.4/Sub.2/1993, 6

(1) 김영삼 정부하에서의 '과거청산' 시발

새로이 등장한 김영삼정권의 '개혁'은 필수적으로 '과거청산'으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자칭 '문민정부'로서 구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과거'의 정리를 통하여 현정권의 기반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과거 지배집단을 구성하면서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기득권층의 부분적 균열과 와해는 이들이 금기시해 온 제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지난 시대의 많은 불의와 구정권이 저지른 비리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진상이 드러나거나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의 현대사의 여러 부분과 사건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가열되었다. 과거 항일투쟁을 하였다고 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친일행적이 드러나 그 보훈을 취소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었다.⁴⁶⁾ 미술계 일각에서는 김기창 화백의 그림이 친일적이라 해서 그의 갤러리 건축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과거 친일부역자들이 각 분야를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실의 발굴과 재해석의 시도는 그 자체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⁴⁷⁾

한편으로 국회에 의해서도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사안에 대한 조사특위가 생겨나거나 결의안 제출등이 이루어졌다. 이완용의 손자가 토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를 막는 특별법제정활동이 있었고⁴⁸⁾ 또한 김구의 암살배후 은폐문제와 관련하여 암살범 안두희에 대한 조사활동⁴⁹⁾도 있었다. 최근에는 여야의원 74명에 의하여 국회에 '4.3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⁵⁰⁾

46. 이런 일들을 두고 조선일보의 사설은 "지금 우리는 온통 전력시비와 과거시비에 몰두해 있는 것 같다"고 쓰고 있다.(1993년 7월 12일자 조선일보 '역사는 쟁 고(考)'라는 논설)

47. 그동안 "우리 역사학계가 현실회피적 생리와 진실규명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1993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듣고 있던 터였다.

48. 위에서 본 '민족정통성회복 특별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법률안은 "구한말 이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다른 한편 매국적 반민족행위와 관련한 민족사의 왜곡을 시정하고 정통성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목적으로 하여 민사시효 배제, 특별검사임명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49. 1992년 11월 6일 '백범김구선생 시해진상규명위원회' 회장 이강훈등 23인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에 따라 국회 법사위가 1993년 12월 15일 '백범김구선생 시해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1994년 1월 4일 1차조사작업으로 안두희에 대한 증언청취가 있었다.

50. 1994년 2월 3일자 동아일보 기사.

(2) 또다시 '역사의 뒤판길'로 빼물되는 '과거청산작업'

그러나 새정부의 개혁과 사정활동은 주로 과거의 뇌물수수등의 비리에 집중되었고 국민들의 원한이 사무친 인권유린사건, 정치적 테러사건등은 거의 백안시되었다.⁵¹⁾ 구시대의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왜곡되고 조작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라는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문사건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된 것이 없었다.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재판에 회부된 김근태고문사건의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법정구속이 고작이었다.⁵²⁾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토록 가혹한 고문이 행해져 그 '독열매'로서 김근태씨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제기⁵³⁾,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판결은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과거청산작업을 포함한 이른바 개혁정책은 곧바로 여러 곳으로부터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개혁의 주체세력인 집권당 자체에서의 조직적인 저항, 관료들로부터의 사보타이지가 잇따랐다.⁵⁴⁾ 교육, 노동, 통일등 많은 분야에서 기득권과 수구세력의 반격에 맞부닥친 현정권은 결국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청산과 개혁의 한계는 외부의 영향과 압력에서라기 보다는 김대통령과 집권세력 그 자체의 한계와 속성에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았다. 이른바 12.12사태에 관한 김영삼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그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해방 이후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5.16, 10월유신, 12.12

51.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새정부가 출범한 1993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2천93명이 구속되었는 바 인허가와 뇌물수수등에 연루된 공직자 3백5십명, 금융부조리와 교육비리에 연루된 사회지도층 인사 1백6십7명, 기타 비리 연루자 1천5십6명이었다.(1993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

52. 1993년 8월 23일 그동안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는 고문경관들이 항소심의 선고공판에서 전원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것이다.(1993년 8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53. 김근태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관한 변호인들의 변론요지서 (김상철, 정의로 가는 길, 1988, p. 246)

54. 김영삼정권의 이같은 한계는 태생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민자당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김영삼정권이 개혁을 내세웠으나 개혁을 위한 인적 대상은 바로 민자당의 민정, 공화계로 상징되는 구정권의 인물들이며 그들이 바로 현정권을 탄생시킨 중심인물인데다가 아직도 정부와 당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1993년 11월 8일자 한겨레신문 논설)

사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새 정부는 나름대로 정치적 평가를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학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⁵⁾⁵⁶⁾

이것은 ‘말’에 의한 ‘정치적’ 평가에 만족할 뿐 법률적 청산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더 이상 수사를 벌이고 형사적 소추를 단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1993년 5월,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등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에 대하여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⁵⁷⁾. 특히 김대통령은 윤곡사업 감사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라”는 지시⁵⁸⁾를 내림으로써 사실상 전직대통령은 조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마침내 김영삼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국제화’선언으로 그동안 들먹여졌던 과거청산의 문제는 또다시 역사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집권당에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는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 역시 이 선언에 사실상 동조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과거문제가 재론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⁹⁾

5. 외국에서의 경험과 사례

55. 1993년 7월 24일자 한국일보 기사

56. 광주문제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김대통령은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이며 “진실은 역사속에서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는 것이 자신의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담화는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을 크게 실망시켰다.(안병찬,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다”, 시사저널 1993년 6월 24일자 시론, p. 96)

57. 이른바 ‘12.12사태’의 공소시효는 1994년 12월 13일로서 이제 겨우 10개월여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건에 기울이는 검찰의 성의는 미약할 뿐이다.

58. 1993년 7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

59. 이기택 대표는 당초 ‘미래지향노선’을 내세웠다가 당내 비주류와 개혁의원모임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여 일부 후퇴한 사실이 있다.(1993년 11월 8일 한겨레신문 기사)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비주류와 개혁의원모임 역시 과거청산문제에 대해 신선한 정책과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민자당이 주도하는 ‘국제화’ 물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 살아나오는 역사

냉전의 빙벽이 녹아내리면서 전 세계에 걸쳐 그 뒤에 갇혀있던 진실이 살아나오고 억울한 사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컬럼부스 아메리카대륙 상륙 5백주년을 맞이하여 1993년 한해는 학살자로서의 컬럼부스와 초기 유럽이민자들의 역할이 선명히 부각되는 작업이 전세계적으로 계속되었고⁶⁰⁾, 역시 호주의 개척자로서 그 원주민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캡틴 쿡’의 죄과가 3백년의 세월을 넘어 고발되기도 하였다.⁶¹⁾ 보다 최근의 과거사 문제로는 195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메카시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이었다. ‘세기의 재판’ 또는 ‘원자폭탄 케이스’로 널리 알려져 있는 로젠베르크 사건이 지난해 8월에서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연례총회의 모의재판에 올라 무죄가 선고되었다⁶²⁾. 또 다른 유명한 ‘알제르 히스’ 사건 역시 소련 KGB 문서보관소 책임자의 증언으로서 그가 당초 혐의를 받았던 소련을 위한 간첩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기도 하였다.⁶³⁾

대만에서도 역사의 오류에 대한 시정작업이 진행되어 지난 1947년 국부군에 의해 학살된 10여만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약 7천6백9십2만달러를 배상하는 조치가 1993년 6월 10일 확정되었다.⁶⁴⁾ 러시아정부 역시 스탈린 통치시절 연해주에서 중앙아시

60. 미국에만 해도 70개나 되는 도읍이 컬럼부스에서 이름을 따온 정도로 승양되던 그가 이처럼 곤욕을 치루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미국땅으로 밀려들던 유럽의 이민들에게는 그가 경배와 존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남북미주에서 ‘낙원’의 삶을 즐기고 있던 3천만명의 인디언 원주민의 90%가 향후 100년에 걸친 학살과 유럽에서 옮겨온 질병으로 그 땅에서 사라짐으로써 이것을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학살자, 약탈자로서의 컬럼부스라는 평가에 500년이 걸린 것이다.(Chrisite Davies, “Blaming Columbus”, *Chronicles*, October 1992, p.18 이하, Oswald Iten, “Columbus the Explorer--Hero or Thief?”, *Swiss Review of World Affairs*, Vol. 42 No. 8, November 1992, p.13, 및 Mike Gonzalez, “The Bloody Story of Christopher Columbus”, *Socialist Review*, March 1992, p. 46 이하등 참조)

61. 호주의 원주민들은 ‘캡틴 쿡’과 그를 뒤따라 온 백인정착자들을 ‘인도에 대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고발할 것을 언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1770년 ‘보타니’만에 ‘캡틴 쿡’이 상륙하기 전 호주는 무인도였다는 원 영국주민의 주장을 뒤엎은 1992년의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고무되어 나타난 것이다.(1993년 6월 18일자 The Times 지 논설)

62. 이 사건은 이미 재판당시 논쟁이 있었으나 1953년 6월 원자폭탄 비밀을 소련에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줄리어스 로젠베르크와 그의 처 에델이 처형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후 40여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은 끝없이 제기되어 왔다. Walter and Miriam Schneir, *Invitation to an Inquest: Reopening the Rosenberg ‘Atomic Spy’ Case*, Penguin Books, Baltimore, 1973 및 Stanley Yalkowsky, *The Murder of the Rosenberg*, 1990 참조.

63. The Boston Globe, 1992년 10월 30일자 기사

64. 1993년 6월 12일자 한국일보 기사

아로 강제이주당한 한인동포에 대하여 1993년 4월 명예회복조치를 취한 데 이어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⁶⁵⁾

이와 같은 전세계적인 '과거청산' 작업은 사실상 나치범죄자 처단의 집요한 노력과 맞닿고 있다. 이미 50년 이상이 흘러버린 과거사에 그토록 메달린 이유는 나치희생자들의 사라지지 않는 고통과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인류의 결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지가 유태인 생존자와 그 동조자들의 나치범죄자 추적에 나서게 만들었다. 이들의 손에 아이히만이 잡혔고, 바르비가 프랑스로 송환당해 재판 받았다. 아흔살이 넘은 '덴안유크'라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이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받아왔으며, 비쉬정권하에서 보로도 경찰총감이었던 르네 부스케가 강제수용소로 유태인을 송출한 혐의로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 지난해 6월 암살당했다.

이와 같은 서구의 일반적 역사청산보다는 남미와 다른 지역에서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거나 민간정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과거 자행되었던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처리를 들려싼 논쟁이야말로 우리에게 보다 시사적이라고 할 것이다.

(2) 남미등 대규모 인권유린국에서의 경험과 교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군사정권의 폭압적 통치하에서 대규모의 인권유린을 경험한 남미의 여러나라, 필리핀등에서⁶⁶⁾ 독재정권의 붕괴와 민간정부 수립 후 민주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과거청산의 노력을 해 왔는가 하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가 될 수밖에 없다.⁶⁷⁾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들 나라에서의 '과거청산'도 결코 성공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지독한 군사독재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철저하게 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았으

65. 1993년 7월 8일자 한국일보 기사

66. 이 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그리스, 포루투갈, 스페인등이 1970년대 중반 권위주의적 정부의 붕괴와 더불어 민주적 정부로 이행한 바 있다.

67.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는 그 형태에 있어서 대단히 유사한 폭압을 자아내는 제도화된 폭력의 교재"라고 할 수 있다.(Charles Harper, "Introduction", *Behind the Mask: Human Rights in Asian and Latin America, An Inter-Regional Encounter*, Human Rights Resources Office for Latin America,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이러한 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과정청산의 경험은 우리의 생생한 교훈이 될 수 있다.

며 많은 경우 과도적인 정권에 의하여 사면을 받거나 단지 미온적인 조사과정만을 거쳤다. 이것은 과도정권의 속성과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즉 이들은 대체로 종래의 군부정권과의 일정한 타협아래 성립된 정권들이었으며 권력 잔류로 군부의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의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치열하였으며 때로는 중요한 군사지도자들의 기소와 재판에 성공한 사례들이 보인다. 남미에서 상대적으로 민주화를 이루는데 성공한 몇나라의 예만 들어본다.⁶⁸⁾

가. 아르헨티나

1983년 선출된 알폰신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양하기 몇 주전 스스로 자신들을 위하여 선포한 사면령을 무효화 시켰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실종사건'(disappearances)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였으며 과거의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고위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시도하였다⁶⁹⁾. 당초에는 시민으로부터 압력이 워낙 거세어 알폰신 자신이 원했던 것 보다는 더 강한 '과거청산'의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과거 장군들이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렸던 그 암흑의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계속된 경제적 난조, 무장 반란등은 군부의 재동장 우려를 낳아 의회로 하여금 기소의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만들었고 이로써 아주 소수의 고위 군사지도자들이 기소되고 증거조차 확보된 다수의 군인들이 그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다⁷⁰⁾. 그 당시 두 명의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7명의 군부지도자들이 기소되었고 18명이 기소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끝이어 1989년 등장한 메넴 대통령은 이들의 대부분을 사면하고 말았다. 과거청산작업이 시작된지 6년만에 단지 두 사건만이 유죄로 결론이 났고 5명의 중요 범죄자들이 구금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를 탈출하여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추방된 카를로

68. 이하의 사례 가운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의 경우는 *Human Rights Watch, No. 4, Special Issue: Accountability for Past Human Rights Abuses*, December 1989 를 정리, 요약한 것이다.

69. 군사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은 서적으로 *Amnesty International, Argentina, the Military Junta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Trial of the Former Junta Members*, London, 1987, 논문으로 Speck, P.K, "The Trial of the Argentine Junta: Responsibilities and Realities", *University of Miami Inter-American Law Review*, 1987, pp. 491-534 등을 참고할 것.

70. 1987년 알폰신 대통령은 '직무이행법'(Due Obedience Law)을 만들어 종령 이하의 군인들이 직무상의 행동(acts of duty)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한 바 있다.(The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위의 글, p. 14)

스 메이슨 장군 사건도 당시까지 계류되어 있던 사건이었다.

나. 우루과이

우루과이에서 '과도정권'의 성격은 장래의 정부가 희생자들이 제기하는 경 우외에 과거의 인권유린 사건을 스스로는 절대로 파헤치지 않겠다고. 다짐한 1984년의 군부와 정치 엘리트 사이의 합의에 의해 설정되었다. 그러나 2년동안 의회와 희생자들이 180여명의 군인과 경찰관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놀란 행정부는 그와 같은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은 소멸하였으며 법원에 기소된 사건조차 행정부가 기각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문맹을 제외한 전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5백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대하여 그 법률이 유효한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압하였다. 위축된 줄리오 마리아 상구네티 정부는 국민투표를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 그 법안의 거부가 군부의 개입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여 58:42로 그 법안의 유지에 성공하였다.

다. 칠레

칠레 역시 군사정권 스스로의 손으로 1973년 9월의 쿠데타와 1978년 3월 사 이에 벌어진 각종 실종사건에 관하여 자체 사면령을 발포한 바 있었다. 이른바 1978년의 3월 19일의 포고령 2191호가 그것이다. 이 사면령은 칠레 대법원에 의하여 단순히 형벌을 면제할 뿐만아니라 조사의 권한까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⁷¹⁾ 실종자의 행 방 조사까지 법원이 시도하는 것을 봉쇄하였다.

그러나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1973년부터 아일원 대통령에게 정 권을 인계한 1990년까지 16년 6개월동안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과 투쟁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아일원 대통령은 군정하에서 실종되거나 학살당한 정치인, 시민 2천명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과 전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아일원법안'을 둘러싸고 이에 반대하는 군부와 미온적임을 지적하는

71. 이른바 1990년 8월 24일자 Insunza et al vs. Manuel Contreras et al 사건의 판결에서 대 법원이 내린 해석이다. 이에 따르면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가해자와 범죄행위의 내용이 특정 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민사소송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권단체 쌍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⁷²⁾ 새로운 조사기기관을 구성하려는 이 법안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고⁷³⁾, 의회의 구성이나 피노체트의 존재로 말미암아 위 사면령을 폐지하거나 이를 위헌선언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199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국가 요원 또는 개인에 의해 자질러진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피해 구제의 방안과 장래의 재발방지책의 건의등이 임무로 주어졌다. 그러나 사법권은 없기 때문에 조사후 통상적 법원으로 이송되게 되어 있었다. 희생자와 그 가족, 인권단체, 군대로부터 접수한 정보가 넘쳐 흘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 위원회는 1992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연금 또는 일시불의 손해배상 지급, 추가적인 사건의 조사등을 가능케 하는 법률 19123호가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다.⁷⁴⁾ 칠레의 민주화, 과거청산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 필리핀

1972년 내려진 필리핀의 계엄령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전통을 그 한방에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다⁷⁵⁾. 그 이후 대규모로 이루어진 일상의 인권유린은 필리핀을 국제인권단체 사이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권오명국의 하나로 올려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 2월의 혁명은 탄압과 빙곤, 부폐와 외세의 지배로부터 이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세력의 약속으로 비춰졌다. 실제로 집권초기에 아키노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의 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공산당(CPP) 신인민군(NPA)지도자를 포함한 정치범의 석방등으로 인권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드러난 것처럼 보였다.⁷⁶⁾

이러한 기대는 1987년 한해동안 아키노 행정부 정책의 방향과 해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반란에 대한 '전면전' 정책과 '민간자위봉

72. 1993년 9월 16일자 경향신문 기사

73. 피노체트 정권 아래서 인권유린의 일익을 담당해온 사법부는 권력의 민주화과정에서도 가장 완고한 장애로 남아 있었다. 특히 아일원 대통령등장 이후 2년간 보여준 대법원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인식만 확산시켰다.

74. Cecilia Medina, "Chile: Obstacles and Challenges for Human Rights",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10 No.2, 1992, pp.109-129.

75. Richard Pierre Claude, "Philippines", *International Handbook of Human Rights*, Edited by Jack Donnelly and Rhoda E. Howard, Greenwood Press, London, 1987, p.279

76. Rosario Garcia & Arnel de Guzman, "Whither Human Rights?", *Justice and Peace Review*, Vol.4 No.3, 1990, p.7

사자' 조직(The Civilian Volunteer Self-Defense Organizations)이 민간인을 무장화하여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식으로 광범하게 새로운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⁷⁷⁾ 수많은 종교인, 인권운동가, 시민들이 백주 대낮에 살해되기 일쑤였으며 고문과 정치적 구속자가 늘어났다. 군부의 포로가 된 민간정부의 한계로서 필리핀 사례는 인용된다.

6. 결 론

지난 6공화국 정권 당시 이른바 '5공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그 완결을 강조하며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1990년의 신년사에서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한 전임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지난날의 문제를 밝히고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한 이제 이 문제에 분명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 지난 시대로 또다시 돌아가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라와 거례의 앞날을 어둡게 할 뿐이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주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한 지난날의 문제는 이제 역사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⁷⁸⁾ 김영삼대통령도 거의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이미 지적하였다. 그러나 두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리 '과거의 문제'는 또다시 살아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종지부'는 '종이 위에 찍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진상의 규명과 법률적 조치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또다시 '의문부호'로 남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갈망은 그 원한과 불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서 과거의 과오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친상을 밝히고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정부가 혁명적 발상과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일 뿐더러 국가는 언제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의 성향과 그 한계는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정치적 사건과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해결의 과제는 오히려 시민운동

77. Report of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Study Mission to the Philippines, January 1988

78. 1990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

과 인권운동단체, 법률가단체등 민간단체들의 두 어깨에 쳐지 않은 짐이 지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쟁없는 인권의 보장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한 감시없이 확보되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에서 어쩌면 이러한 민간단체의 인권유린사건 청산노력은 정부의 그것에 앞서 끌고 뒤에서 미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거사의 청산작업은 결코 강령적 선언이나 정치적 구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⁷⁹⁾ 시민의 힘으로 그러한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직화해 내고 이를 사회와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일,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과 고발을 제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⁸⁰⁾, 피해자들의 치유와 생존을 위해 드는 노력을 다하는 일,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입법운동을 벌이는 일등이 모두 이들 단체들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하는 일들이다⁸¹⁾.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과 수단은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고단한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사회는 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삶의 질이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79. 예컨대, 사법부의 개혁과 관련한 '정치판사' 논쟁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처음 변협은 '정치판사 명단 공개'를 운위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민변 역시 '정치적 판결 사례집' 간행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역시 불발이었다. 사법부에서는 "법관은 오직 양심과 용기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므로 정치판사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과거의 과오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한 태도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초의 큰소리와는 달리 변협과 민변이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과연 사법부내의 판사들이 지난 세월동안 보여준 판결의 내용들과 성향, 언동등에 관하여 충분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옥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이것은 결국 구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80. 과거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사법부의 예속성과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많아 기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81. 문국진고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고문피해자보상특별법' 제정 등 고문피해대책축구 청원서를 제출하며 사회문제로서 인식시키기 위한 언론활동등 다양한 방식의 운동이 드보인다. 그러나 더욱 바란다면 위와같은 특별법제정을 청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고문피해자의 상황과 실태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특별법의 초안을 마련한 다음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정식 법안으로 상정되도록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고문방지협약가입운동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순서이고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푸는 과정일 수 있을 것이다.

토론

◎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

김영삼 정권 1년간의 인권개혁이 있었느냐에 대해 저는 없었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속에서 몇가지 제도 개선이 있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물론 있었지만 그것은 김영삼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투쟁하여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안기부법은 민주당의 많은 투쟁속에서 개선 되었습니다. 여당은 절대적으로 개정하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날치기통과 속에서 지난 정기국회가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정한다. 수사권 폐지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수사권을 폐지하느냐!

여러분 문민정부와 군사정부의 근본적인 구별의 기준은 어디 있겠습니까? 안기부를 통한 통치를 하면 군사정부요 그렇지 않으면 문민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기부의 수사권을 없애야 문민정부가 되지요. 문민정부가 돼야 사법부의 개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호응을 안합니다. 그래서 수사권 폐지해야만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하니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 것이지요. 운좋게 민주당이 날치기를 저지하자 수사권의 극히 일부를 양보하였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할 수 없이 안기부법에 연행해가자마자 구치장소를 통지 안해주면 1년이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안기부, 당에선 반발하고 국회에 조항 삭제를 요구하여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정부는 전혀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기부를 통제해야 합니다.

여당은 처벌규정을 두었으니 이번엔 국회위원이 정보위원회에서 비밀을 취득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면 국회위원을 처벌하자는 규정을 넣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보위원회를 못만들고 협상하는 중입니다. 오늘 김영삼 정부의 인권개혁 의지의 현주

소가 이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의 안기부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는 안기부등의 술한 협박을 이겨가며 민주당의 공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과거청산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성명서 발표 등 많은 사면복권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석재 사면을 위한 들러리 몇명외에 복권이 안되었습니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 중 정치적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건인 김대중납치 사건에 대해 규명하자. 이에 김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없습니다. 조작간첩사건 또한 진실을 규명해 보자 해놓고 수사기록 하나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청산에 대한 사면복권, 획기적 개혁외엔 그런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민주당도 인권개혁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93년 5월 공직자 재산공개를 초법적으로 했습니다. 개혁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자고 하였더니 언론과 여당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치영역에서는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통설기밀보호법, 선거법, 지방자치제법,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혁을 1차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서도 법을 상정해 놓고 있으나 여당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치 개혁속에 인권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으며 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음으로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법부의 개혁이 인권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전체 제도로서는 개혁이 어렵습니다. 여야 다수결로는 여당입장만 통과되기 때문에 정치개혁이 끝나면 여야 동수의 협상대표를 만들어 사법부를 개혁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하에서 법과 제도를 통한 인권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변호사님의 발제 중에서 인권위원회나 청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고문협약에 가입을 하고 고문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나라도 고문방지법을 만든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고문방지법을 만들어 그안에 상설 인권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인권대회에 고등판무관제도를 두는 것을 논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등판무관제도를 도입, 그것이

인권위를 통해서 제도화 되어야 되지 않나 하여 구상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규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바로 어제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선생의 70회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세계인권대회에서 유럽전역에서 모인 국제사면위원회 회원들이 외롭게 생일을 맞는 아옹산수지를 위해서 호소문도 낭독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양심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51년에 구속 지금까지 44년째 구속되어 있는 김선명선생은 우리 양심수 가족들이 김영삼 정부의 1년을 맞이하여 당연히 양심수들이 석방될 줄 알고 있었는데 바로 며칠전에 법무부는 이들 양심수들에 대해 석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선생도 또 기나긴 감옥살이를 더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 1년에 김삼석이라는 젊은이가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고 간첩 혐의로 재판증인데 남매가 성고문을 당했다고 호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사는 논고를 통해 고문범죄에 고문수사관을 처벌해달라는 고소까지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문시비를 벌이는 사람은 바로 국가공권력을 흔들리게 하려는 술책이라고 검사는 주장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 대응하려는 인권단체에 대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박석진이라는 양심수는 소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수갑을 두개씩이나 차고 꽁꽁 묶여서 발에 족쇄까지 차고 강제 급식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단편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이 김영삼 정부 1년의 인권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박원순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재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재심제도가 법제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심제도가 부당한 절차, 과거 잘못된 법률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재심제도를 활용하려면 여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재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 수사기록등을 확보하고 살펴보고 그 근거로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전 한 피해자가 재심을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등사신청을 했습니다만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청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줄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등사를 해 준 전례가 없으므로 복사를 해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접근을 해보기도 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증거자체가 제대로 위조, 변조될 것까지도 없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광주교도소에 간첩혐의로 13년째 수감중인 무기수 박동훈씨는 81년 재판당시 그의 친구가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박동훈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증인은 박동훈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서기 바로 전에 안기부로부터 고문을 당했고 이에 위증을 한 것입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결정적인 증언을 할 친구가 이러저러한 상황에 의해서 위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재심의 사유에 합당치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되려면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지 못했고 이때 증인으로 서지 못한 것은 안기부등 수사기관의 협박으로 증언을 하지 못한 경우 그것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는 증언으로서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증거나 증언으로서 뒤집을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듯이 재심의 사유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박동훈씨의 경우 유일한 증거가 망치입니다. 박동훈씨의 간첩혐의의 증거들을 모두 인멸하기 위해서 망치로 때려부쉈다고 수사관들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망치 하나를 증거라고 내놓았지요. 그것으로 박동훈씨의 유죄가 되었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되는데 망치 자체가 위조된 증거인데 법원에서 이것은 위조된 증거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전교도소에 10년을 수감중인 나종인씨의 경우인데 재판증에 친척들이 모두 위증을 했습니다. 지금 재심사유를 보면 나종인씨가 위증한 친척들을 무고죄로 고

소해서 유죄판결이 나야 그때야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서상 가능한 일입니까? 또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간첩사건이 많은데 그당시 재판에서 '기소중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증인들이 입국을 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이 아닌 경우 귀국도 어렵고 귀국 즉시 구속 가능성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을 감수하고 증언을 하려와야 합니까? 이러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심요건의 문제점이외에도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심제도는 결과적으로 재판도 안해보고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심개시 여부를 서류검토로 결정하는데,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뒤집는 것이 재심인데 우리의 관료적인 법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교도소에 80년도에 구속되어서 수감중인 석달현씨는 재심이 기각되어 항고를 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재심청구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심에 대한 어려운 여건이 엄연히 존재하고 현행 재심제도가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현행 어려운 재심제도로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면 이들 사건이 처참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에 의해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들의 고문에 관여한 수사관, 검사들을 고소·고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7년이라는 공소시효제도로는 어떠한 구제방법도 없습니다. 이들 시효제, 재심제도라면 법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해결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역사심판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시효제는 없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안될때는 현대사에서 유신, 5공등의 강압적인 상태에서 시효제도 자체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시효가 언제부터 개시되었는가 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민정부 출범 또는 늦어도 5공 청문회가 열렸던 그때를 시효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시효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민족정통성에 대한 특별법안을, 국회청원을 한다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가 아니고 지금의 정치상황으로 볼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유용한 사람들이 그 권력층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법 자체가 제정될 지 의문입니다.

현실 여건의 어려운 점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는 조금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자리에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의 경우 수많은 법률가들이 이러한 일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자리에 계신분들,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야 할 과거청산의 문제,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양원 (변호사)

-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

1. 요즈음의 문명사적 대전환기라고 한다.

전환이라는 말이 당연히 내포하듯 우리는 지금 불확실, 불명료,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국내외적 제반 상황을 규정하던 상수와 변수의 형태와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제 우리가 걸어 온 길을 오늘 착실히 밟아가면 내일을 자연스레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내일의 전망, 불확실, 불명료, 혼돈의 들판을 위한 동력을 현재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권문제는 대전환기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어줄 수 있는 몇 안되는 통시대적 관심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모두에 이런 말을 장황하게 펼치는 이유는 김영삼정부하에서 인권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종래에 접근하던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2. 정권의 성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인권탄압의 필연성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대항으로서 인권운동이 반정권 투쟁과 직접 결부되는 상황下에서 인권문제는 정치적 피억압의 문제로 집중되었다. 김영삼정부의 태생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도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채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활동이 상술한 국내외적 대전환의 요구에 일면 강제되고, 일면 순응하는 의미를 담는다고 이해한다면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김영삼정부하에서 지난 1년간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할 것인가. 정치적 피억압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크나큰 개선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5공은 물론이고 6공보다 지난 1년간의 인권침해사례를 살펴본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폭넓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삶의 질 등 인권의 제반요소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본다면 대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 이전에 비하여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4. 흥교수의 발제문 내용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위낙 상세히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조금 다른 문제의식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지금 시기 인권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한 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삶의 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생활속의 인권, 광의의 인권이 전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피억압의 문제와 아울러서 그러나 점차로 더욱더 큰 비중을 가지고 생활인권의 문제가 고양되어야 한다. 지금 진행된다고 하는 개

혁과 변화의 모든 계기는 인권적 측면에서도 포착될 수 있다.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 경제학의 핵심 주제로서 인권문제가 파악될 수 있다.

김영삼정부 1년을 맞아 인권적 측면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생활인권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라는 점이다. 정권 스스로를 인권의 수호자로 놓은 것이 지금의 국내외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정권 담당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국제화 시대, 지구촌화 시대를 맞아서 인권문제는 범세계적 관심사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국가간의 경쟁, 국민간의 교류에 있어서 인권상황, 인권의식이 차지하고 영향을 주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라도 구시대적 유물인 제반 인권침해적 법규의 개폐가 시급히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이 자연스레 소통될 수 있도록 국내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인권문제의 최적의 해법은 뭐니뭐니해도 국민일반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한 여론의 환기와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인권의식을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지배체제가 이완되면서 자연스레 고양될 수 있다. 지금시기는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이고, 정부에 대하여도 활동의 각 측면에 적합한 요구와 비판이 가해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 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1. 무너진 기대 : 인권정책 없는 '문민'

'문민'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권상황 개선에 큰 기대를 걸었다. 오랜 군사독재 횡포속에서 웅크리고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문민'이라는 언어의 마술은 적어도 초기에는 상당한 효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허망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3·6 대사면"은 이른바 '문민' 시대 인권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고해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문민' 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현재까지의 1년동안 이것은 거듭되는 실망속에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면서 이제 '문민' 정부의 인권정책 부재는 거의 분명해졌다.

'문민' 정부가 만일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정책이 가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과거에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

둘째, 여러 가지 법제도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정비

셋째,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지 계몽이다.

'문민' 정부는 이 어느 것 하나에도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며 관심도 전혀 없어 보인다.

2. 외면되는 과거 인권문제의 청산

오랜 군사독재통치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강요했고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이 과거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독재시절의 인권문제는 동시에 분명히 현재의 인권문제인 것이다.

재판도 없이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안감호소에서 빼앗긴 백수십명의 장기수들, 70년대 이후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정책적으로 대량생산된 '조작 간첩'들은 여전히 피눈물 삼

키며 죽은 듯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삼청교육'의 악몽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육체와 정신에 들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많은 고문 피해자들은 오늘도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계속 정신병원에 들락거리거나 정신병을 앓은 채 방치되고 있다. 십중팔구 권력의 피묻은 손이 어둠 속에서 저질렀을 42건의 '의문사' 사건은 아직 단 한 건도 정부차원에서 조사되지 않고 있다.

1517명의 해직교사 대부분이 최근 복직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교조의 맹렬한 노력과 '전교조 탈퇴'라는 다소 굴욕적인 양보 끝에 이루어진 결과로서 '문민'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것이다. 약 1200명에 이르는 해직 언론인, 무려 5200여명에 이르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내지 명예회복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6 대사면'에서 석방되지 않았던 200여명의 양심수들은 그 극히 일부가 석가탄신일 혹은 연말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으며, '문민' 정부 1년만에 만들어진 222명(민가협 통계)의 양심수가 새롭게 그 자리를 메꾸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어둠의 한시절을 종결 지을 것을 표방한 '문민'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문민' 출범 후 1년이 되는 지금까지 이런 노력은 전혀 없다. 갖가지 인권범죄의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진상조사에 착수 할 조짐마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끔찍한 권력범죄들을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준 '정치판사'들은 오늘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 '문민' 정부는 끝내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민'과 '군사'의 진정한 단절점은 바로 '시인'에 있다. 즉 과거에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악행을 '시인' 할 수 있는 '문민' 만이 군사독재 체제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문민'의 이름에 값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태(胎)를 빌어서 출생한 김영삼정권은 당연한 일로서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한 까닭에 직장에서 내몰렸음을 '시인'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많은 '좌익분자'들이 재판도 없이 십수년동안이나 구금 당한 사실이 인권침해였음을 '시인' 하지 않으며, '간첩'이 70년대 초 이후로 정책적으로 대량생산 되었음을 '시

인'하지 않는다. 33세 나이에 여섯번이나 정신병원을 드나든 문국진씨의 고통스러운 정신질환이 80년과 86년에 그가 경찰에서 받은 처참한 고문에 기인하는 것임을 '시인'하지 않으며, 많은 '의문사'가 권력의 테러에 기인하는 것임을 '시인'하지 않는다. 물론 '정치판사'의 존재도 '시인'하지 않는다.

과거의 권력에 의한 인권범죄를 청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영삼적 '문민'과 과거의 '군사' 사이에 단절은 없다. 즉 '문민'적 인권상황과 '군사독재'적 인권상황 사이에 단절은 없는 것이다.

3. '문민' 시대에도 여전히 정권에 봉사하는 억압법제

'문민'의 이름에 값하는 정부, 그러니까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무엇보다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일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개폐하고 국민들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와 보장하는 법제도를 확립하는 일이다. 특히 '문민'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이들 법률과 제도는 적어도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민' 정부의 이러한 법제도 정비 의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 '문민' 정부는 지금 군사독재시기에 만들어진 악법이 안겨주는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이를 개폐하기 위한 노력을 사보타지 하고 있다.

인권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는 만사 젖혀놓고 개폐해야 할 많은 법률과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가. 불법 입법기구에서 만들어진 '법률'

우선 과거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정권 탈취자들에 의해 구성된 불법 입법기관이 대량생산해낸 이른바 '법률'들이 있다. 1467건 (전체 법률의 32%)에 이르는 이런 '법률'의 상당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집권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민' 정부는 이들 사이비 법률의 정비작업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사건은 '문민' 1년에도 숨가쁘게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문민' 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인권 탄압법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최근의 민가협 통계에 의하면 김영삼정부 출범 1년만에 국가보안법 혐의 구속자는 모두 13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의 전체 시국·공안사건 구속자 222명 중 62.4%에 해당한다(한겨레 신문 1994. 3. 9.). 이법이 우리나라에서의 인권 실현에 얼마나 큰 장벽이 되어 있는지는 전체 시국·공안 사법 중에 차지하는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의 비율 추이를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1994. 2. 민가협 통계).

| | | | | |
|-------|----|---|-------|--------|
| 1990년 | 6월 | - | 32% | (398명) |
| 1991년 | 6월 | - | 41% | (537명) |
| 1992년 | 5월 | - | 47% | (455명) |
| 1993년 | 2월 | - | 59.1% | (399명) |
| 1993년 | 9월 | - | 70.4% | (253명) |
| 1994년 | 2월 | - | 83.3% | (220명) |

또한 국가보안법사건 불기소율 통계는 '문민' 시대가 얼마나 국가보안법의 그물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시대인가를 보여준다(1993년 가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 | | |
|-------|---|-------|
| 1990년 | - | 27.5% |
| 1991년 | - | 33.0% |
| 1992년 | - | 16.5% |
| 1993년 | - | 11.3% |

국가보안법이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고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유린의 도구로 악용되어왔음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31일에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표현·집회·여행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계속 상용되고 있다."라고 비난했으며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에 바야흐로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문민’ 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공식 입장으로서 굳힌 국가보안법 존속 방침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으며, 군사정권과 똑같은 완고함으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거부하고 있다. ‘문민’ 시대에 들어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는 완전히 죽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노동관계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개폐되어야 할 법률은 노동관계법이다.

그러나 ILO에서 한국정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 등 시급한 부분마저 개정될 전망이 없다.

노동부 산하에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개정시안을 마련했지만 이 시안에는 집권세력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있어 가을 정기국회 상정이 포기된 채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 타결 직후 ‘국가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과제로 노사안정을 위한 임금 억제라는 정책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자 억압법으로서의 노동법제가 개정될 가능성은 다시 멀어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생리휴가 무급화’ 결정과 함께 ‘근로자 파견법’이라는 신종 노동악법의 제정 움직임마저 노골화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어차피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물건너갔다’는 분위기, 아니 경쟁력 강화가 ‘신화’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법 ‘개정’은 곧 ‘개악’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문민’ 정부의 노동정책은 분명히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하에서 시행된 억압적 노동정책으로 복귀하고 있다.

라. 사법제도 개혁

‘사법제도 발전위원회’가 법조계를 망라하여 만들어진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라 해도 거기서 진행될 논의를 살펴볼 때 우리는 역시 완강한 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치판사’ 척결문제가 흐지부지 되어버린 조건에서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어차피 맥빠진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에서 무엇을 논의하든 말든 여전히 이 순간에도 공안경찰은

영장 없이 피의자를 납치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수사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수사관이 변호인 면회를 방해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영장실질심사제도나 불구속재판원칙이 강력한 공안경찰과 ‘정치판사’가 엄존하는 조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상고허가제등 사법개혁에 역행되는 신설 제도가 더 맹위를 떨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나간 1년동안 사법부의 몇몇 판결은 인권존중이라는 관점에서 괄목할 만한 진보를 보였다. 105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필리핀 노동자 2명에게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논란거리가 되어온 ‘국가기밀’의 개념에 대해서도 과거 판례와는 달리 황석영, 김삼석재판에서 그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최근에는 대법원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역 전교조 해직교사 10명에게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런 판결들은 어쨌든 사법제도가 개선되어 나갈 것을 예시해준다. 그러나 물론 사법제도의 개혁은 ‘문민’ 정부의 인권에 대한 배려에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아는 법조인들의 용기와 노력에 의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4. 언제까지 인권교육의 황무지인가?

‘인권교육’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도 대단히 생소한 말이다. 누구나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보장 받아야 할 인권항목을 우선 알아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인권’을 배워야 한다. 인권의식은 결코 배우지 않는 직감이나 양식만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멀리는 유구한 봉건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거쳐, 그리고 특히 해방 후 오랜 독재의 시기에 우리는 ‘건방지지 말 것’, ‘자유가 방종에 흐르기 쉬움’, 그리고 ‘악법도 법’임을 골수에 박히도록 배워왔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군사문화와 반공이데올로기를 공기 마시듯이 몸에 익혀왔으며 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제멋대로의 인권유린에 무감각했다. ‘인권교육’이라는 말이 생소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군사독재시기를 통하여 우리사회에 인권교육이란 눈꼽만치도 없었고 반인권교육만

이 기승을 부리고 판을 쳤던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특히 '문민'을 자처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인권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이 인권교육이 '문민' 정부의 정책 일정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다. 학생들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의 체계적인 인권교육, 공무원 특히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초보적인 인권교육, 그리고 UN 가입국으로서 내지는 인권에 관한 여러 다자간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당연히 지게 되는 의무인 인권에 관한 갖가지 UN 문서·조약들을 알기 쉽게 번역·해설함으로써 국민에게 홍보하는 일 등, '문민' 정부가 손을 대려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문민' 2기 내무부 장관인 최형우씨의 "사상범에게는 고문을 해도 괜찮다"는 발언에서, 총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는 '선진국'을 부러워 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서, 아니 그 무엇보다도 출범 초기부터 강압적인 자세로 들이대어진 '고통분담'이라는 논리 그 자체에서 우리는 애당초에 이 '문민' 정권이 인권교육에의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문민' 시대의 인권상황, 그 전망

'문민' 1년 …..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데 대해 누구나 큰 이의 없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개선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향상이 있었다"는 관측은 착각일 가능성성이 크다. 부분적으로는 '문민'과 개혁이라는 요란스러운 슬로건 공세로 인한 착각이고, 부분적으로는 전반적인 재야운동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시국·공안사건의 절대량이 감소한 사실을 간과한 데서 오는 착각이다.¹⁾

법무부에 의하면 1990년부터 1993년 8월 까지 시국·공안사건(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등,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선거법)통계는 아래와 같다.

연도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등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선거법 총계

'문민'과 '개혁'의 빛은 바래어가고 언어의 마술은 점점 약발을 잃고 있다. 청와대와 재벌과의 '관계정상화', 'YS'와 '전·노'와의 '대화해', 그리고 구속되었던 비리 인사들의 잇단 석방과 대통령의 농민시위 강경진압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목격하면서 애초 '문민'의 꿈에 부풀었던 국민들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정당하고 공평무서한 법과 제도에의 희망을 벌써 잃어가고 있다.

과거 박정희·전두환정권의 '개발독재'를 방불케 하는 '고통분담과 국가경쟁력 강화'론은 우리의 인권상황에 분명 먹구름을 던지고 있다. 즉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동통제와 그로 말미암은 민생고,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의 동결 내지 삭감은 필연적으로 민주화 자유화의 절실한 요구를 낳을 것이며 이 요구를 암시하기 위하여 군사독재시절의 악법이 '문민'에게도 여전히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다. 경찰 안기부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폭력은 제한적이나마 여전히 동원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잠시 고개를 숙였던 '정치판사'들이 다시 '사법부 개혁'에 코방귀 뀌게 될 것은 충분히 예

| | | | | | | |
|------|-----|-----|-----|-------|-----|-------|
| 990 | 731 | 943 | 384 | 1,175 | 705 | 3,938 |
| 1991 | 551 | 570 | 624 | 774 | 493 | 3,012 |
| 1992 | 441 | 175 | 155 | 468 | 518 | 2,258 |
| 1993 | 115 | 53 | 58 | 93 | 558 | 877 |

(1993년 통계는 1월부터 8월까지)

* 노동조합법 위반사건의 구속율은 대체로 100명에 1명꼴도 안되는 것을 감안할 때 주로 인권시비가 야기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 노동쟁의조정법일 터이나 이 네가지 법령 위반사건은 '문민' 1년에 격감한 것을 알 수 있다.

* 적어도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우리의 판단으로는 사건 수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사건다운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다. 즉 작년 여름쯤에는 마치 경찰청 각 대공분실이 마지못해 할당량이라도 채우려는 듯이 '건'도 되기 어려운 사건을 연행, 기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노태훈사건, 민중정치연합사건, 국제공산주의자당·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사건 등). '문민' 정부 출범 후 1년동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139명 중 재판절차를 마친 것은 70명이며 그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8명(12.5%)에 지나지 않는다.

상되는 사태인 것이다.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적 조류 때문에 인권상황에 부분적인 개선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 하에서도 군사독재하 인권상황의 기조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이제 고난의 시절이 지나고 가만히 있어도 '문민'이 알아서 과거를 청산해주고 억압법제를 정비해주고 인권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배려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확실히 어리석은 꿈일 따름이다.

●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하시어 저는 제가 겪은, 작년도에 있었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준식 선생님께서는 인권상황이 더 나빠지셨다고 부정적으로 말씀 하시는데 제가 90년도 감옥에 갔을 때와 93년 감옥에 갔을 때는 현상적으로 정치범의 경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까지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작년 1월에서 7월까지 독방에 있어 내용을 잘 몰랐는데 갑자기 3, 4월에 감옥이 미어 터졌습니다. 보통 7명 합방하는 곳에 10여명씩 수용하였고 영등포 구치소의 경우 대략 30%정도 늘어 1700여명에서 2500명으로 늘었지요. 신문에서 유명한 사람은 영등포 구치소에서 장세동씨가 독방에 있었고 국회의원 이택돈씨 등 그 숫자는 칠백명 중 십여명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고 줄줄이 들어온 경우는 중 2, 3학년생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일명 '범죄소탕 180일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본드흡연, 친구와 싸우다가 들어온 사람, 추행 등으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앞쪽 독방에 중국인 교포가 있어서 그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의 경우 사형은 많은데 중고생을 감옥에 넣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중고생이 많은가, 고등학생도 살인정도가 아니면 거의 안들어 온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들어왔느냐고 묻자 그는 만주에 있었는데 북한에서 온 선생으로부터 배웠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혐의로 되었지요. 구타로 인해 탈장이 되어 피를 흘

려서 보안법은 해당이 안되고 여권을 조작했다 하여 들어왔다고 합니다. 맞은 것 때문에 보름동안 먹방에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서 민변을 소개해 주었는데 연결이 안되고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지금은 손을 안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소위 간첩이라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로 있지만 전보다 현상적으로 나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의 경우 개인적으로 90년보다 93년도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뒤늦게 잘 몰라서, 근로자들이 묻는 노동문제에 관해 답하기 위해서 노동법 해설을 썼습니다. 원래 4월에 선거법으로 들어갔으나 노동법 해설중 '한국사회는 외세 지배하의 전근대적 잔재가 유지되어온 자본주의 사회'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보안법상 위반이라고 제3자 개입금지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추가로 기소시키겠다고 검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3자 개입은 노동부 장관도 폐지한다는 마당에 그 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위의 방침이니 제3자 개입은 빼줄테니 국가보안법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놓은 것에 책임을 지겠다 하고 도장찍고 썼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님께서 시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효때문에 먹을 보았지요. 글을 쓴 7조 1항 5항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81년에 썼으니까 10년이 지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도 있었고 검사들도 보고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보는데 뒤늦게 집어 넣느냐 했더니 여하튼 법은 과거의 모든것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다하여 그런가 했습니다. 조서를 다 받고 났는데 갑자기 오라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놔두고 제3자 개입금지법으로 기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님께서 미국까지 다녀오신 분이 약속을 위반하시면 되느냐 그랬더니 언제 그랬느냐 합니다. 결국 노동조합교육을 많이 다녔는데 한 10건 중 현대중공업노조 간부교육 한건만 기소를 시켰습니다. 그중 92년도 만 쟁의가 없었습니다. 쟁의가 없던 때를 기소하면 틀림없이,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현대 노조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오면 그들을 촉발시킨다 그러면 93년도 쟁의가 발생된다, 나는 그것을 원치않는다 했지만 기소를 하고 양쪽에서 증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검찰측 증인은, 제가 노동조합 교육을 할 때 인사부장, 노무부장, 노무과장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석시켰는데 그분들은 당시 노동조합 노동교육이 좋았다고 하였지만 교육 내용 중 일부만 옮겨오니 불리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도중 6개월이 넘어 위헌 재정신청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민' 정부라는 것은 꼭 김영삼 정부의 힘에 의해서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87년 6월 항쟁과 7·8월 대투쟁 이후에 밀으로부터 도도히 흐르는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부분적으로 과도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야 언제 정부가 해 주길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민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인권이 향상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가지 문제만 제기할까 합니다.

첫째로 인권문제, 법적 청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법적 청산의 주체가 되느냐? 현재는 기득권층이 어쩔수 없이 부분적으로 청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체가 좀더 일하는 사람들, 민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될때 이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검사님 두분이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견책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혹자는 별거 아니다 형식적으로 말 할 수 있는데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때려도 신문에 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미흡하지만 견책처분이 검사님들한테는 명예에 관한 문제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맞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관계되어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금융실명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검찰청 당국의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만 바로 주체가 아직도 웃을 바꿔 입은 기득권층에 의해서 움직여 지는 것이 아닌가. 기득권층이 수구에서 개혁으로의 변화가 있었지만 저는 오래된 30년 군부독재가 아닌 100년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득권층들이 변화하는데는 단번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점차적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에 참여하면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둘째로 청산의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있다해도 우리가 참여해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달성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또 다른 외피,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고통과 복잡한 이론을 알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고 봅니다. 때문에 최근 작은 성과지만 약 500백명에 달하는 양심수 군문제가 투쟁에 의해서 전에는 2년이상 되어야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나이들어 군대를 가면 군복무 후,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갈 수 없는 이것이 사회 현실입니다.

다. 이부분에 대해 조금, 2년에서 1년으로 면제되는 결과, 단식 민주당 농성 등 통해서 조금의 결실이 있었지만 1년이라는 보충역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청산의 관점과 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은 일제의 잔재,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면서 구체적으로 악법개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지요. 청산이 민족자주적 관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극히 피상적인 청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혁이 계속 밀고 나가주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제도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곧 중단했습니다. 앞에서 국가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가경쟁력에 의한 고통 분담론은 박정희 군부독재하에 30년동안 계속되는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청산의 방향은 일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얘기 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국보철폐 단식을 하는데 보안과장이 찾아와서 법무부 교정국에서 빨리 해결하란다며 국가보안법철폐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했을때 국가보안법중 7조 하나만 철폐한다면 단식을 풀 수 있다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7조 하나만 철폐된다면 90% 차지합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개량적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실에서 법 철폐는 국회를 통과하거나 엎어치지 않는 한 불가능 합니다. 우선 90% 들어가 있는 사람을 구하자, 사회로부터 활동을 못하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변화의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문제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87년 국가보안법이 약간의 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점차적 개정이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법개폐 문제, 인권의 문제를 꼭 정치범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중에는 제3자 개입금지로 원주에 있는 흥중희씨가 구속되었습니다. 11월 30일에 노동조합법 제3자 개입금지와 쟁의조정법 제3자 개입금지 두 가지를 들어 구속되었습니다. 보통때는 업무방해 폭력등이 꼭 끼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게 없었던 같습니다. 가정이 있으니 빨리 나오고 싶어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이가 서른 여덟에 중사출신인데 6월 항쟁때 1군사령부를 나와서 원주시민회 사무국장과 노동문제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양자를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는데 가장이 구속

되었으니 굉장히 어렵게 되었지요. 시인하면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시인하지 않고 있는데 첫재판후 두번째 재판에 5주를 탔습니다. 시인을 안 하면 6개월 가량 풀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밖에 계신 분들이나 저도 대개 6개월을 채우거나 다 살고 나오는데 그안에 있으면 아주 10년 살 사람은 느긋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이내는 빨리 나가려고 해요. 잘하면 집행유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법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인을 합니다. 보통 싸우려하지 않습니다. 현실 여건이 이렇습니다. 홍중희씨 같은 경우 재판연기를 5주를 태웠는데 1월 27일에 재판하고 3월3일에 재판 날짜가 잡혀있지요. 신문에는 서울형사지법 판사님들은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한다고 나온 것을 보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없엔다고 할 무렵 저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언론을 안타면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오면 괜찮은 것 같고, 산재의 경우도 상당한 인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산재와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에 이상한 제도가 만들어져 일반화 되어 있는데 공상이라고 합니다. 소위 산재를 당하면 노동부에 등록이 안되고 회사비용이나 부서 모금으로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재해 100일 작전등으로 산재 신청을 못하여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신문에 산재사망자와 산재액수가 최초로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석탑노동연구원에서 한솔제지의 하도급 건설노무자가 죽었는데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공상처리 비슷하게 된 사건을 다루었는데 지금까지 1년간이나 진정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제는 인권이 개선된 듯하여 언론도 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민변에서 1년간의 인권의 문제가 아직도 현저히 남아 있다는 홍성우 대표간사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슴 절절이 눈물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광교수님께서는 국가경쟁력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근로자중에서 신문에 부분적으로 나고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 전망이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김영삼정부에 대해서 호소문, 건의문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안쓰고 죽을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뭔가 좀더 격렬한 운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인권정책은 여러가지 정책이나 좋은 제도등이

있으나 제대로 되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변호사님, 검사님, 판사님 등 법조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권이 개선될 수 있을까? 저는 감옥안에서 이수성 교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왜 사법연수원생들이 감옥에서 1주일 정도 와서 생활하고 나서 판검사를 안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1주일 정도만 그곳에서 생활하면 한국의 인권문제나 법률의 여러가지 문제는 반쯤은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당에 가 계신 강신욱 의원님께서 91년도 제가 감옥에 있을때 국회 발언에서 제가 편지로 쓴 내용과 똑같은 발언을 해서 참 좋은 발언을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역시 감옥에 갔다온 변호사는 다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감옥을 좀 많이 가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더 인권문제에 관해 관심이 많지 않을까 여기에 계신 법조인들께서 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구치소에 가서 그냥 생활하다 보면 구치소가 좋아질 것이고 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미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 내용에는 큰변화가 없다. 93년도 경우 감옥에 있는 일반범들은 못하다고 하였으나 우리 정치범들은 숫자가 적어 외롭긴해도 나아진게 아니냐고들 했습니다. 저희들의 숫자는 국민속에 대단히 적더라구요. 다수의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실한 인권이 구호에만 그치는 인권, 유명한 사람만의 인권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인권, 일하는 사람의 인권, 미래를 지향하는 어린 학생들이 권리의식을 갖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폭넓은 어떠한 인권제도가 확립될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마칩니다.

맺 음 말

현상적으로 나아진 듯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발제자와 다섯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다들었습니다.

오늘 3시간여 토론회를 차분한 가운데 1년여간의 인권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인권에

관해 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토론회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말을 대충 간추려 보면 김영삼 정부가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인권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말씀이 많았습니다. 크게 보면은 신한국이나 인권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정체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이 아쉽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법제도 개혁적인 개혁되고 개정되어야 할 과제가 훨씬 많고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을 위해 과거청산은 필수적이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그런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법제도 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김영삼 정권에게서만 바라고 기댈 것이 아니라 인권단체나 인권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인권의 신장을 위해 싸우고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들의 인권교육과 인권홍보에 힘을 써야한다는 것으로 요약하며 오늘의 의미있는 토론회를 끝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